

#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

2020.12.10.(목)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 전문 ]

영화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환경을 드러내며, 세계에 대한 이해와 변화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인간의 깊은 감정을 자아냄으로써 연대를 표현하는 소중한 매체입니다. 솔한 사람들이 영화와 상호작용하는 관객이자 배우이며, 노동자, 스태프, 창작자, 제작자 등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전 과정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격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배반하는 영화는 그 어떤 성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과 세계에 해로울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영화인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고유한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안녕과 발달에 적합한 지원과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인권은 영화제작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관련된 성인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경제적·성적인 착취 및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건강이나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행위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작사를 비롯한 책임 있는 모든 주체들은 모든 형태의 착취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무를 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디션, 출연 동의, 계약, 개인정보 공유 및 공개, 인터뷰 및 홍보, 제작 과정, 편집, 상영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보호받을 권리는 위험의 차단인 것이지 경험의 차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자신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충분한 참여 속에서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나이, 장애, 성별, 피부색, 민족적 출신,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성적지향 등을 불문하고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평등해야 안전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사는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사 존중과 참여는 존엄성의 평등한 존중 속에서 권리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적합한 환경은 곧 모든 영화인에게도 존엄성에 부합되는 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보장은 영화현장의 모두를 위한 약속이자 실천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며 지금 여기서 존중받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서 열거한 사항 외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반 규정을 영화현장에서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약속한 모든 세대의 약속입니다.

이 원칙은 정부와 책임 있는 영화산업 참여 주체들이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원칙이 추구하는 바가 영화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 모든 영화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약속합니다.

- 01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 02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03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04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05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 06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07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해 노력합니다.

# 01

##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을 다하며,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은 영화제작의 전 과정에서 차별 없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고유한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는 4대 원칙은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입니다.

###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자신의 성별, 인종, 출생,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언어, 종교, 문화, 정치·사회적 견해, 장애, 경제·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 나. 항상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 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 활동 여부를 충분한 조력 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화 활동에 참여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없애고,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합니다.

### 마.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영화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할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활동과 휴식, 그 외 활동(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가와 오락, 학습 등)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성장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돕습니다.

####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고, 가족과 일상을 누릴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성격이나 재능, 신체 및 정신 발달 측면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른 문화 예술 활동에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필요시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충분한 학습 시간을 보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학업 요건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영화제작 활동을 이유로 학교 수업 불참 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03

###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가.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영화제작 활동 중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상해, 학대, 성희롱, 따돌림, 괴롭힘, 무시, 부주의, 흑사, 착취, 과도한 요구 등을 근절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소셜미디어 등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폭력과 학대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신체·정신적 학대, 모욕적인 언행과 처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참여하기 좋은 활동 환경을 만듭니다.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하고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영화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수단과 숙소 및 식단을 제공합니다.

#### 다. 모든 형태의 착취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각종 오디션, 출연 동의와 계약, 개인정보 공유 및 공개, 인터뷰 및 홍보 활동, 영화 제작·편집·상영 등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04

###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나이와 발달 정도를 고려합니다. 과도한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체력이 고갈되는 경우 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영화제작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폭력과 협박 또는 속임수와 꾀임 등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을 결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적절한 활동시간과 충분한 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영화제작 활동시간은 관련법을 준수하며,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아동·청소년 영화인과 법정대리인 등이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가. 항상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화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신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 활동 여부를 충분한 조력 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관계자는 과도한 노출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약물이나 범죄 등 정서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절대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 라. 아동·청소년 영화인과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히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영화제작 활동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정보 등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충분히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관련 기관, 영화 제작사를 비롯한 영화산업 참여 주체, 협회, 조합 등은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가. 권리 존중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을 지킬 것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홍보합니다.

### 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합니다.

영화의 규모와 특성, 활동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확인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개선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영화제작 활동 중에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력, 과도한 활동,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 라. 안전하고 신속한 신고와 상담, 보호 등에 필요한 체계를 만듭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자신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폭력, 과도한 활동, 그 밖의 문제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영화제작 활동과 관계가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문제가 확인된 경우,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영화인은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해 노력합니다.

관련 기관, 영화 제작사를 비롯한 영화산업 참여 주체, 협회, 조합 등 모든 영화 관계자는 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인식 개선과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선발하고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선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의 고양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영화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아동·청소년 영화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영화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 [주석]

### 1. 아동·청소년 영화인

‘아동·청소년 영화인’이란 19세 미만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용어와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에서는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영화인에 대하여 최대 포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국내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기준 나이	대표적인 법률
아동	18세미만	유엔아동권리협약
	18세미만	아동복지법
청소년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연19세미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8세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19세미만	민법
소년	19세미만	소년법
	15세미만	근로기준법

### 2. 영화제작 활동

‘영화제작 활동’이란 영화의 제작을 위한 모든 공간과 시설 등에서의 활동을 말합니다. 영화 촬영현장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을 위한 전 단계(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상영 및 홍보 등)에서의 활동을 말합니다.

### 3. 관련 법률 및 표준계약서

위 ‘원칙’과 관련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있으며, 관련한 표준계약서로는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부속 합의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등이 있습니다.

##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 1.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전화) 1855-0511
- (누리집)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 (주요업무) 불공정한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법률 상담, 법률 지원서비스 등

### 2.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인신문고

- (전화) 02-2272-1505
- (누리집) [www.sinmungo.kr](http://www.sinmungo.kr)
- (주요업무) 영화산업종사자 고충처리 신고.조사, 법률/노무/심리 상담 지원,

###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

- (전화) 02-3668-0200
- (누리집) [www.kawf.kr](http://www.kawf.kr)
- (주요업무)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등

### 4.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 (전화) 1588-2594
- (누리집) [www.kocca.kr](http://www.kocca.kr)
- (주요업무)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대중문화 예술인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소양교육 등

### 5.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전화) (상담신청)1855-0511(내선번호 2)/예방교육안내(02-730-1087)
- (누리집) <http://solido.kr>
- (주요업무)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희롱·성폭력 교육 지원 등